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 (박성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010
----------	-------

발의연월일 : 2023. 8. 24.

발의자 : 박성민 · 김용판 · 정동만  
이채익 · 이종성 · 이명수  
이현승 · 金炳旭 · 김영선  
조은희 · 유의동 · 정우택  
이만희 · 강민국 · 이인선  
의원(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 관리 및 정비계획의 수립 ·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경사지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최근 이상기후로 인하여 국지적 집중호우 및 강우 강도가 높은 극한 강우가 빈발함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 위험성이 증가하여, 최근 5년간(2018~2022년) 급경사지 피해가 261건 발생하였음. 그런데 인명피해를 유발한 급경사지 붕괴사고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기관이 등록 · 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각지대에서 발생하여 현행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급경사지를 파악하여 관리 대상에 포함하

고,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준을 고시하며, 안전조치명령이 내려진 급경사지 주변에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상시계측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교육의무를 부과하는 등 급경사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각종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등).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급경사지 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5조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지 않은 급경사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법에 따라 해당 급경사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 “붕괴위험지역의”를 “급경사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관리기관은 붕괴위험지역”을 “관리기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급경사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관리기관이”를 “관리기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기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급경사지 정비사업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급경사지 정비사업 관련 조사·계획·설계·시공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기준에 관한 도서 등의 작성·보급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급경사지 주변에 안전조치명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사실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30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자는”을 “사용자 또는 그 소속 기관은”으로 한다.

3.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시계측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32조의2제5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13조의2제1항의 정비사업 기준에 관한 도서 등 작성·보급 업무의 수행

제33조의 제목 중 “위임”을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

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시계측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사전 실무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상시계측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3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전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p><u>제5조의2(급경사지 실태조사) ①</u></p> <p><u>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u>  <u>시장·군수·구청장이 제5</u>  <u>조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통해</u>  <u>관리하고 있지 않은 급경사지</u>  <u>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u>  <u>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u></p> <p><u>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u>  <u>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u>  <u>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 및</u>  <u>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u>  <u>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시장·</u>  <u>군수·구청장 및 관리기관은</u>  <u>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법</u>  <u>에 따라 해당 급경사지를 관리</u>  <u>하여야 한다.</u></p> <p><u>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u>  <u>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u>  <u>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제8조( <u>붕괴위험지역의 계측관리 등)</u> ① <u>관리기관은 붕괴위험지역 지반의 침하·활동·전도(顛倒) 및 붕괴 등으로 위치변</u>	<p>제8조(<u>급경사지의 계측관리 등)</u></p> <p>① <u>관리기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급경사지-----</u>  -----</p>

화를 사전에 감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지속적인 계측(計測)·자료  
관리(이하 “상시계측관리”라 한  
다)를 직접하거나 제22조에 따  
른 계측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⑤ 국가는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상시계측관리를 할 경우 계측기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관리기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

제13조의2(봉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기준 등) ① 행정안전부 장관은 급경사지 정비사업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급경사지 정비사업 관련 조사·계획·설계·시공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기준에 관한 도서 등의 작성·

제17조(재해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붕괴위험이 있는 관할 구역의 급경사지에서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후단 신설>

## ② · ③ (생략)

제30조(계측전문인력의 사전 실무교육) ① 상시계측관리의 공정성과 공신력의 확보 및 기술력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

보급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 제30조(계측전문인력의 사전 실무교육) ① ----- ----- -----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훈련과정을 사전에 이수하여야 한다.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u>3.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시계측</u>
	<u>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자를 고용하고 있는 <u>사용자는</u> 전문기술자가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u>3.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시계측</u> ----- ----- <u>사용자 또는 그 소속 기관은</u>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의2(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설립) ① ~ ④ (생 략)	제32조의2(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설립)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u>8. 제13조의2제1항의 정비사업</u>
	<u>기준에 관한 도서 등 작성 ·</u>
	<u>보급 업무의 수행</u>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제33조(권한 <u>위임</u> ) (생 략)	제33조(권한 <u>또는</u> 업무의 <u>위임</u> ·
	<u>위탁</u> )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